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105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탈퇴)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원고 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행난, 장종환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3. 6. 7. 접수 제549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갑1 내지 갑6)

-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 5. 14. C과 보증금액 30,430,000원, 보증기한 2024. 5. 13., 채권자 D은행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3. 9. 11. 부실처리 되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C을 대위하여 2024. 1. 18. D은행에 대출원리금 8,901,0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C이 지급하여야 하고,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356,696원이다.
-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257,731원(대위변제 잔액 8,901,035원+법적절차비용 356,696원) 및 그 중 8,901,035원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24. 3. 27.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4. 5. 2. C에게 통지한 후, 2024. 5. 29.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C에 대한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이전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사해행위가 C의 부실화 시점에 발생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E카드, 중소기업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F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취지)

- C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양주시 G 도로 56㎡ 및 H 도로 36㎡가 있는데 그 가액은 607,447,100원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F에 대한 446,000,000원, 원고에 대한 8,901,035원, 피고에 대한 101,084,795원 등 총 740,477,05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해행위 당시 및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이다.

- C은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6.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상회복

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C과 정상적인 상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은행의 채권최고액을 감안하면 재산을 감소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은행의 담보대출 실행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602,505,500원이었고 사해행위 당시 C의 F은행에 대하여 44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156,505,500원 상당의 교환가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특정채권자였던 피고에게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하기 위한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가 사해행위 무렵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오성우

별지